

2016년도

2016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 12. 23. (금요일), 10:00~10:30
- 장 소 : 한국의 집
- 출석위원 : 박영규(위원장), 김명자, 김상보, 김용덕,
김지민, 박상미, 양종승, 연제영,
임장혁(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건】

1.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1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11-001

1.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 제안사항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6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16.10.21.)에서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 예고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6.10.31.~11.30.)하고,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6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분야 지정 조사 계획 포함(‘16.5.31.)
-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16.6.29.~9.26.)
 -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 92.92점
- 2016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16.10.21.)
 - ‘씨름’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
 - 지정 예고 후 종목 지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함.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는 소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음.
 - 소위원회 위원은 무형문화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함.

2) 예고사항(관보 제18874호/2016.10.31./문화재청 공고 제2016-304호)

- 예고내용
 - 문화재명 : 씨름
 - 지정사유
 - 씨름은 두 사람이 살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자 민속놀이임.

- 씨름은 전통적 세시풍속 대동놀이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꾸준히 전승되어 오면서 각 지역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로 자리매김함. 또한, 기술 및 도구, 운영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남.
- 이처럼 씨름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 예고결과: 이의제기 없음

라. 검토의견

2016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심의할 내용 :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

바. 의결사항

- 가결함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